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 3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안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제1616호

3) 제출일자 : 2020년 6월 5일

4) 회부일자 : 2020년 6월 10일

5) 추경예산 편성 사유

- 시민들의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완화되는 추세이나, 이로인해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자 매출감소 등 경제적 충격이 극심한 상황임
- 이에 도시교통실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사업 및 향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동반하여 재원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추진

2. 추경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6,468억 71백만원 보다 413억 61백만원(2.5%)이 증가한 1조 6,882억 32백만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0억 10백만원보다 △143억 48백만원(△17.9%) 감소한 656억 62백만원으로 편성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2,994억 71백만원보다 △118억 65백만원 (△0.9%) 감소한 1조 2,876억 6백만원으로 편성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44억 11백만원보다 678억 74백만원(34.9%) 증가한 2,622억 85백만원으로 편성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9억 79백만원으로 예산증감 없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억보다 △3억원(△3.0%) 감소한 97억원으로 편성

【도시교통실 세입예산안】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제3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가율 (%)
총 계	1,688,232	1,646,871	41,361	2.5%
일 반 회 계	65,662	80,010	△14,348	△17.9%
교통사업특별회계	1,287,606	1,299,471	△11,865	△0.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62,285	194,411	67,874	34.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2,979	62,979	-	-
도시개발특별회계	9,700	10,000	△300	△3.0%

□ 세출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조 167억 13백만원 대비 968억 23백만원(3.2%)이 증가한 3조 1,135억 36백만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65억 13백만원보다 △71억 74백만원(△1.6%)이 감소한 4,493억 39백만원으로 편성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2,737억 34백만원보다 △690백만원(△0.1%)이 감소한 1조 2,730억 44백만원으로 편성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3억 29백만원보다 678억 74백만원(93.8%)증가한 1,402억 3백만원으로 편성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373억 13백만원보다 371억 14백만원(3.3%) 증가한 1조 1,744억 27백만원으로 편성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8억 2천 4백만원보다 △3억원(△0.4%)이 감소한 765억 24백만원으로 편성

【도시교통실 세출예산안】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제3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3,113,536	3,016,713	96,823	3.2
일 반 회 계	449,339	456,513	△7,174	△1.6
교통사업특별회계	1,273,044	1,273,734	△690	△0.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0,203	72,329	67,874	93.8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74,427	1,137,313	37,114	3.3
도시개발특별회계	76,524	76,824	△300	△0.4

II.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증액 내역〉 : 없음

〈감액 내역〉

- 도로사용료 △143억 48백만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제3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65,662	80,010	△14,348	△17.9%
도로사용료	61,254	75,602	△14,348	△19.0%

나.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 : 없음

〈감액 내역〉

-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71억 74백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제3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449,339	456,513	△7,174	△1.6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32,176	39,350	△7,174	△18.2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증액 내역>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41억원
- 기타회계전입금 103억 69백만원

<감액 내역>

- 기타사용료(주차부대시설) △49억 85백만원
- 일반부담금 △237억 33백만원
- 국고보조금 △99억 99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167억 11백만원
- 예탁금 및 예수금 △9억 6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1,287,606	1,299,471	△11,865	△0.9%
기타사용료(주차부대시설)	17,602	22,587	△4,985	△22.1%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0,917	16,817	34,100	202.8%
일반부담금	195,933	219,666	△23,733	△10.8%
국고보조금	51,816	61,815	△9,999	△16.2%
순세계잉여금	119,590	136,301	△16,711	△12.3%
기타회계전입금	571,524	561,155	10,369	1.8%
예탁금 및 예수금	165,203	166,109	△906	△0.5%

나.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

- 마을버스 재정지원 110억원
-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104억 37백만원
- 교통관리계정 전출금 103억 69백만원
-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68억 63백만원
- 도심연계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 16억 50백만원 등 9건

〈감액 내역〉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30억원
- 동부캠퍼스 복합시설내 공영주차장 건립 △48억 89백만원
-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30억원 등 26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제3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1,273,044	1,273,734	△690	△0.1
교통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분석	50	100	△50	△50.0
예비비(교통관리계정)		865	△865	△100.0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870	189	681	360.3
드론택시 시범비행	1,000		1,000	순증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일반예비비	102		102	순증
인력운영비	24,039	25,639	△1,600	△6.2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교통개선분담금계정)		10,200	△10,200	△100.0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	1,201	2,201	△1,000	△45.4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19,480	9,044	10,437	115.4

사업명		제3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마을버스 재정지원	37,150	26,150	11,000	42.1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내 공영주차장 건립	2,000	6,889	△4,889	△71.0
	예비비(주차장관리계정)		139	△139	△100.0
	교통관리계정 전출금	157,369	147,000	10,369	7.1
	차 없는 거리 운영	3,774	4,374	△600	△13.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0,399	34,799	△14,400	△41.4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18,006	11,143	6,863	61.6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634	894	△260	△29.1
	도심연계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	4,946	3,296	1,650	50.1
	지하철 역사내 자전거 경사로 및 역이용 안내도 설치	294		294	순증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3,550	15,050	△1,500	△10.0
	도로교통 소통 개선	2,730	3,230	△500	△15.5
	회전교차로 설치	280	560	△280	△50.0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12,199	12,406	△206	△1.7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교통대 책 수립 및 교통개선	1,512	1,662	△150	△9.0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1,514	2,314	△800	△34.6
	현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 성		3,000	△3,000	△100.0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3,590	3,690	△100	2.7
	인력운영비(시간제 계약직)	7,532	8,554	△1,022	△11.9
	교통정보센터(Seoul TOPIS) 운영	2,056	2,176	△120	△5.5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 치	2,677	2,967	△290	△9.8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5,343	5,920	△577	△9.7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 영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2,193	12,299	△106	△0.9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경찰 청)	1,046	1,150	△104	△9.0
	서울 시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 확충	1,234	1,500	△266	△17.7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87	1,747	△60	△3.4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증액 내역〉

- 국고보조금 75억 60백만원
- 모집공채 495억원
- 순세계잉여금 108억 14백만원

〈감액 내역〉 : 없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262,285	194,411	67,874	34.9%
국고보조금	7,560		7,560	순증
모집공채	200,600	151,100	49,500	32.8%
순세계잉여금	42,814	32,000	10,814	33.8%

나.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

-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262억 68백만원
- 사당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22억 20백만원
- 당산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22억 20백만원
- 강변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22억 20백만원

- 서울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7억 38백만원
- 강남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8억 12백만원
- 홍대입구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11억 7백만원
- 합정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11억 7백만원
-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82억 78백만원

〈감액 내역〉

-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 △70억 96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140,203	72,329	67,874	93.8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118,024	61,756	56,268	91.1
사당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2,220		2,220	순증
당산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2,220		2,220	순증
강변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2,220		2,220	순증
서울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738		738	순증
강남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812		812	순증
홍대입구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1,107		1,107	순증
합정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1,107		1,107	순증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10,258	1,980	8,278	418.1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		7,096	△7,096	100.0

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80억 57백만원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27억 26백만원
-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운영관리	4억 32백만원
-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2억 89백만원
-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	156억 11백만원

〈감액 내역〉 : 없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제3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1,174,427	1,137,313	37,114	3.3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73,824	55,767	18,057	32.4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77,442	74,716	2,726	3.6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운영관리	18,719	18,287	432	2.4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3,643	3,354	289	8.6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	19,534	3,923	15,611	397.9

5.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증액 내역〉 : 없음

〈감액 내역〉

- 모집공채 △3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9,700	10,000	△300	△3.0%
모집공채	9,700	10,000	△300	△3.0%

나.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

-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53억 34백만원

〈감액 내역〉

-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 △35억 24백만원

-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21억 10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액(A)	2020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76,524	76,824	△300	△0.4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	500	4,024	△3,524	△87.6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14,964	9,630	5,334	55.4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500	2,610	△2,110	△80.8

Ⅲ.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1. 총괄

- 이번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액의 경우 기정예산 1조 6,468억 71백만원 대비 413억 61백만원(2.5%)이 증가한 1조 6,882억 32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의 경우 기정예산 3조 167억 13백만원 대비 968억 23백만원(3.2%)이 감소한 3조 1,135억 36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800억 10백만원 대비 143억 48백만원(△17.9%)이 감소한 656억 62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4,565억 13백만원 대비 71억 74백만원(△1.6%)이 감소한 4,493억 39백만원임

-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5,668억 61백만원 대비 557억 9백만원(3.6%) 증가한 1조 6,225억 70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2조 5,602억원 대비 1,059억 78백만원(4.1%)이 증가한 2조 6,641억 98백만원임

2. 회계별 검토의견

< 일반회계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00억 10백만원 보다 17.9% 감소(△143억 48백만원)한 656억 62백만원이고,
-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565억 13백만원 보다 1.6% 감소(△71억 74백만원)한 4,493억 39백만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 정부시책에 따른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71억 74백만원) 감액 1건이며, 증액사업은 없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2,994억 71백만원 대비 118억 65백만원 감소한 1조 2,876억 6백만원이고,
-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737억 34백만원 보다 0.1% 감소한 1조 2,730억 44백만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은
 - 증액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104억 37백만원),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마을버스 재정지원(110억원), 교통회계 내부 운용을 위한 전출금(103억 69백만원),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16억 5천만원) 등 9건 이며, 감액사업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102억원),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내 공영주차장 건립(△48억 89백만원),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건설(△30억원) 등 총 26건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44억 11백만원 보다 34.9% 증가(678억 74백만원)한 2,622억 85백만원이고,
-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23억 29백만원 보다 93.8% 증가 (678억 74백만원)한 1,402억 3백만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은
 - 증액사업은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인 광역 철도 건설비 부담(562억 68백만원),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82억 78백만원) 등 9건 이며, 감액사업은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70억 96백만원) 1건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도 계상내역이 없으며,
-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373억 13백만원 보다 3.3% 증가(371억 14백만원)한 1조 1,744억 27백만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은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1~8호선 코로나 19 대응지원(156억 1천 1백만원),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180억 57백만원) 등 5건이며, 감액사업은 없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0억원 보다 3.0% 감소 (△3억원)한 97억원이고,
-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68억 24백만원 보다 0.4% 감소 (△3억원)한 765억 24백만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은
 - 증액사업은 보행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세종대로 재편(53억 34백만원) 1건이며, 감액사업은 을지로 도로공간재편(35억 24백만원), 창경궁로 도로공간재편(21억 10백만원)으로 2건임

3.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사업별 설명서 p.512)

- 동 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 편성을 반영하여 매칭비율(50:50)에 따라 기정예산 1억 89백만원(전액 국비) 대비 6억 80백만원(국비 3억 40백만원, 시비 3억 4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임
- 동 사업¹⁾은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걸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를 지급(최대 20%)하고,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는 것으로, '18년 세종시, 울산광역시, 전주시 시범사업 이후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 서울시는 '20년 사업수립시 국비만 편성하여 사업신청 및 구비를 확보한 강남구, 서초구 등 5개 자치구에만 국비를 교부할 계획²⁾이었으나, 국토교통부 국비가 증액 편성³⁾됨에 따라, 구비편성이 어려운 자치구에

1)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s://www.alcard.kr/>)

2) 2020년도 광역알뜰교통카드 보조금 교부계획(교통정책과-7938, 2020.5.7.)

○ 교부 대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5개 자치구(강남, 서초, 종로, 중구, 구로)

○ 교부 금액 : 국비 총 189,067천원

- 국토부 국고보조금 배분안 통보(*20.3.13, 4.2)

(단위 : 천원)

교부 계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구로구
189,067	67,233	50,424	21,010	14,000	36,400
(5,100명)	(1,600명)	(1,200명)	(500명)	(500명)	(1,300명)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관련 추가 알림(시군구별)(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215, 2020.4.24.)

구분	국비	4월 교부	교부잔액	비고	
소계	529,475,000	8,343,390	521,131,610		
서울	강남구	67,233,000	2,831,670	64,401,330	
	서초구	50,424,000	3,357,750	47,066,250	
	종로구	21,010,000	2,153,970	18,856,030	
	중구	14,000,000	-	14,000,000	신규
	구로구	36,400,000	-	36,400,000	신규
	역분	340,408,000	-	340,408,000	

대해서는 시비를 매칭 편성하여 지원하기 위해 추경 편성하는 것임

[’20년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소계(국비+시비)	국비	시비	구비
기정예산	189,067	189,067	-	189,067
추경예산	680,816	340,408	340,408	-
합계	869,883	529,475	340,408	189,067

○ 대중교통 이용 장려 및 교통비 절감을 위해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예산 추가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서울시는 국비 증액후에도 시비 투입을 통한 사업확대 계획을 현재까지 수립한 바 없고, 자체예산을 편성한 5개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시행했으며, 지난 6월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민원에 대해서도 자치구가 직접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임을 알린 바 있음⁴⁾

○ 5개 자치구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구 예산을 편성·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외 자치구는 서울시가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시비와 구비 매칭없이 지원할 경우 자치구간 공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단순히 국비 증액으로 인해 당초의 구비 매칭사업에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정책방향이 바뀌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4) [민원 회신]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 서대문구로 확대 요청(교통정책과-9674, 2020.6.8.)

우리시의 경우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지역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한 5개 자치구만 사업참여 중에 있습니다.

□ 드론택시 시범비행(사업별 설명서 p.515)

- 동 사업은 국내 드론택시 도입을 통한 3차원 입체교통망 구축을 위해 오는 6월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시범비행 지자체 공모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공모 참여 후 선정될 경우 시범비행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을 신규편성한 것임
- 서울시는 ‘2019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⁵⁾’를 통해 미래교통을 선도하는 서울의 비전과 함께 2025년 자율주행차량, 2024년 드론택시를 운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서울을 만들기 위한 초석인 만큼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 동 사업은 시범비행 사업비(12억61백만원) 및 국내 기술지원비(39백만원) 등 총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시는 금번 추경에서 향후 공모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 부담분(10억원)을 편성한 것이나 시범비행 사업비의 세부 내역을 보면 기체 대여 및 운송료(920백만원), 엔지니어 항공료 및 숙박비(54백만원), 행사운영비(256백만원) 등 단순히 드론택시를 임대하여 운행하는 것 이상의 사업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임

5) 서울시, 8~9일에 이동의 미래 여는 ‘2019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보도자료, 2019.11.6)

- 11.8(금)~9(토)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와 상암문화광장 등에서 열려, 올해 첫 개최

- ‘이동의 자유,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Freedom of Mobility)’가 주제, 서울선언문 채택

- 드론택시 전시, 자율주행차량 시승, 퍼스널 모빌리티 체험 등 즐길거리 풍성

[드론택시 사업비용 : 약 13억원(국비 3억원, 시비 10억원)]

구 분		비 용
합 계		1,300백만원
국내 기술지원(항공안전기술원)		39백만원
시험비행 사업비	소 계	1,261백만원
	기체 대여(블로콤퍼 기준)	800백만원
	기체 운송료(항공운송)	120백만원
	엔지니어 항공료	33백만원
	엔지니어 숙박·숙식	21백만원
	인증비	6백만원
	보관료	25백만원
	보험 등 행사운영비	256백만원

- 또한, 감항증명⁶⁾과 같은 항공기 인증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시범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과의 공동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보이나,

동 사업이 국비 매칭 사업이 아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간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⁷⁾하고 자칫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우려가 있음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과 감항증명을 비롯한 사전검토 절차가 이루어

6)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라. 정비·수리·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전체 13억원(국비 3억원, 시비 10억원)

지지 않은 단계에서 일회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 특히,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불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바, 시범사업 선정 전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동 사업이 단순히 행사용으로 드론택시를 운행하고 마는 1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서울시 드론택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 수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사업별 설명서 p.518)

- 동 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 사업비 중 서울시 부담비를
납부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617억 56백만원 대비 562억 68백만원
(91%)을 증액하는 것임
- 동 사업은 관련 법⁸⁾에 따라 서울시가 광역철도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30%를 국토교통부 산하 사업기관인 한국철도시설
공단에 납부하는 것으로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20년 예산수립 당시 진접선을 비롯한 5개 광역철도의 건설비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GTX-A 및 신안산선의 '20년 보상비 확정⁹⁾이 추가로 이루어지면서 증액편성을 하려는 것임

[2020년 추경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당초)	2020 (추경)	증감	증액 사유
계	61,756	118,024	56,268	
진접선	6,138	6,138	-	
삼성~동탄선	8,721	8,721	-	
신분당선 (강남~용산)	17,773	17,773	-	
대곡~소사선	11,143	11,143	-	
GTX-A	17,981	32,400	14,419	「토지보상법」 제40조 ¹⁰⁾ 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보상금을 지급
신안산선	0	41,849	41,849	신안산선 사업비 지자체별 분담금 확정

○ 최근 3년간 광역철도 건설비 지출현황¹¹⁾을 살펴보면 예산수립 당시 국비 매칭비율(국비70, 시비30)에 따라 사업비를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17년 이후 169억 75백만원의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등 예산편성 당시 보상비와 집행액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할 것임

○ 국비 가내시 금액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서울시 실정은

9)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비(보상비) 분담금 알림(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3247('19.10.25.)

지방비 분담금 납부 협조 요청(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441('20.1.22.)

10)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추경 사업별 설명서 자료

【최근 3년간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비고
2017	20,682	20,670	-	11	
2018	35,622	34,422	-	1,200	
2019	87,361	71,453	144	15,764	

인정되나, GTX-A, 신안산선 등 계속되는 국비 편성금 변경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는 사업별 지자체 부담금 확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9 ~ '20년 GTX-A, 신안산선 건설비 부담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결산			2020 추경		
	2019 (당초)	2019 (집행)	증감	2020 (당초)	2020 (추경)	추경 증감
GTX-A	22,842	-	△22,842	17,981	32,400	14,419
신안산선	11,640	-	△11,640	0	41,849	41,849

□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552)**

- 동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마을버스 적자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정예산 261억 50백만원 대비 110억원 (42%)을 추가 편성하였음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승객수는 39.6% 감소하였고, 운송수입금 또한 39.1% 감소¹²⁾한 것으로 나타나 마을버스 업체 운영에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당초 230억원으로 계획된 재정지원금을 업체 인센티브와 시설개선 비용을 감축하여 24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12) 2020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14076, 2020.5.12.)

<전년대비 승객수 및 운송수입금 비교>

구분	'19. 3월	'20. 3월	차이
승객수(명)	36,629,661	22,112,767	-14,516,894(△39.6%)
운송수입금(원)	22,502,724,900	13,726,212,136	-8,776,512,764(△39.1%)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재정지원금은 6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도 운영을 위해서는 144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하반기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연도별 적자지원 업체 및 지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당초)	'20년 (변경)
예 산 액	7,550	9,685	13,646	19,800	26,000	26,000
지원 업체수	34개사	40개사	50개사	56개사	-	-
지 원 액	7,516	9,645	13,596	<u>19,213</u>	<u>23,000</u>	<u>24,000</u>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하반기	집행액 (3월까지)	필요액	부족액
2019년	28*	16	25*	14	16	17	75 (월평균 15)	192	-	-
2020년	48*	36	52	46	46	46	110 (월평균 22)	136	384	144

※ '20년 전망 시 4월 수준의 승객감소가 6월까지 유지, 하반기는 전년대비 70% 수준 회복 가정

○ 다만, 기존 재정지원금 소진 후 추정되는 금년도 부족액은 144억원으로 금번 추경예산(110억원, 9월분 지급시 소진예상)을 제외하고도 34억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매칭을 통해 부족자금을 충당할 계획을 세운바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분담방식 및 분담비율에 대한 사전협의 미비 등의 이유로 분담금 납부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¹³⁾을 감안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간 논의를 통해 명확한 협의점 마련이 필요할 것임

13) 코로나 위기 대응 마을버스 재정지원 자치구 분담(서대문구 의견)

- 자치구 재정지원 분담금 및 분담방식을 자치구와 협의 후 결정 필요
- 자치구 특별 재정지원 분담금의 관례화는 불가함

- 또한, 일부 자치구가 분담금 납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납부 자치구에 등록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차이를 들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자업체 재정지원 시 마을버스 업체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코로나19 방역 및 임대료 지원 사업(사업별 설명서 p.525~545, p.549~555)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530)은 (주)서울시메트로 9호선 간 협약¹⁴⁾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747억 1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긴급방역 및 물품구입비와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7억 25백만원(3.6%)을 증액 편성한 것임
-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운영관리(사업별 설명서 p.535)은 전문 철도운영기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9호선 2·3단계 구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의회 민간위탁동의¹⁵⁾와 서울교통공사 협약¹⁶⁾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82억 8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및 임대료 지원금 4억 31백만원(2.3%)을 증액 편성한 것임

1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2013.10.23.), 제18조(관리운영비) 및 부록 3. 관리운영비

15)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2014. 4. 24 의결)

1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2017.9.21.), 제15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539)**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¹⁷⁾에 근거하여 우이신설선의 운영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으로 33억 5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을 위하여 2억 89백만원(8.6%)을 증액하는 것임
-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별 설명서 p.543)** 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¹⁸⁾”에 근거하여 지하철 1~8호선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도모하고자 방역소독비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156억 11백만원(398%)을 증액하는 것임
-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사업별 설명서 p.549)** 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¹⁹⁾”에 근거하여 버스 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도모하고자 방역소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04억 36백만원(115%)을 증액 편성하는 것임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8)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9)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추경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		사업구분	3회 추경 주요사업내용
		1회	3회		
총 계		14,413	29,495	-	-
지하철	1~8호선 코로나19 대응지원	3,923	15,611	기정증액 (추경 1회 편성)	- 방역소독용역(전동차, 차량기지, 역사 등) 5개월분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931	2,726	기정증액	- 방역소독물품 구매 5개월분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 운영관리	279	432	기정증액	- 임대료 지원(50%) 감면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141	289	기정증액	* 우이~신설 6개월분 * 1~8호선 방역소독용역 (전동차, 차량기지 등) 2개월분 ²⁰⁾
버스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9,043	10,437	기정증액 (추경 1회 편성)	- 버스분야(시내, 마을, 공항) 방역비 지원 6개월분 - 승차대 방역비 지원 6개월분

- 동 사업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물의 방역 및 상가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144억 13백만원)으로 편성 이후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방역예산 편성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서 지하철 상가 임대료의 50%를 감면함에 따라 추경 편성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방역비가 2개월분(7~8월)만 추경 편성되어,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9월 이후의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추가 방역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사전에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 1~8호선 방역소독용역의 경우 일부항목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1개월 추가 지원

□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 7건 관련(사업별 설명서 p.556~574)**

- 서울시는 경기도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7개소의 이용불편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해 대형 쉘터, 버스 주차면, 운전자 대기실, 화장실 등 승하차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환승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7개 사업 총 104억 2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 국비·시비 분담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별	총 사업비(국비/시비)	'20년 추경(국비/시비)	주요 내용	사전이행절차 (투자심사)	사업별 설명서
사당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100(30/70)	22.2(15/7.2)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556P
당산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100(30/70)	22.2(15/7.2)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559P
강변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100(30/70)	22.2(15/7.2)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562P
서울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20(6/14)	7.3(6/1.3)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565P
강남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22(6.6/15.4)	8.1(6.6/1.5)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568P
홍대입구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30(9/21)	11(9/2)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571P
합정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30(9/21)	11(9/2)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574P

- 서울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계획’²¹⁾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02억원²²⁾(국비 30%, 지방비70%) 총 사업 기간은 2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시민의 대중교통 이동편의를 증진 시키고 교통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된

21) 버스정책과-14330

2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알림’ 광역환승과-258(2020.5.11.)

다고 할 것이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2개년 단기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추진과정에서 지장물 이설 문제, 공사 관련 민원 등으로 일부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며

이 밖에도 환승정류소와 인접한 도로들의 폭이 좁아 환승센터 정비를 위한 도로 다이어트 등 사업 관련 공간 활용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추진 계획에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임

- 또한,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7개 사업 중 사당역·당산역·강변역 3곳만 총 사업비 기준²³⁾에 따라 시투자심사를 거쳤으나 나머지 서울역·강남역·홍대입구·합정역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증해야 할 것임
- 동 사업은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역교통시설임을 감안해 볼 때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시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 보다는 경기도, 인천시 등이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임

2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시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별 설명서 p.577)

- 동 사업은 기존 신양주차장 부지에 50+ 캠퍼스 건립으로 주차난 등 집단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협상이 지연되는 등 사업계획 변경²⁴⁾의 사유로 착공일이 '20년 8월로 늦춰짐에 따라 금년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기정예산 68억 89백만원²⁵⁾중 공사비 48억 89백만원(70.9%)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18년에 예산현액 2억 85백만원이 전액이월 되었고 '19년도에도 11억 63백만원 중 8억 78백만원(75%)이 이월되는 등 해당 예산 대부분이 제때에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감액을 하는 것은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할 것임

공동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들은 사업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들의 추진과정을 재점검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동 사업은 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향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관리하고 계획해야 할 것임

24)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변경 계획' 인생이모작지원과-2241(2019.2.26.)

25) '20년도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내 공영주차장 건설: 총 68억 89백만원(국비 20억원/ 시비 27억 85백만원/ 구비 21억 3백만원)

□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별 설명서 p.581)

- 동 사업은 부족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차고지 지하에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수해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9억 79백만원 대비 시설비(80억 49백만원) 및 감리비(2억 24백만원), 시설부대비(5백만원) 등 총 82억 78백만원(418%)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시내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차고지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림천 일대 침수예방을 위해 차고지 내 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²⁶⁾으로

'14년 7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²⁷⁾ 이후에는 「지방재정법」²⁸⁾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거쳐 '15년 11월 투자심사, '16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나 '19년 8월에는 사업면적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동 사업은 '18년 예산 현액 156억 96백만원 중 60억 65백만원(38.6%) 이월되었고 '19년 예산 현액 70억 70백만원 중 8억 60백만원(12.1%) 이월되는 등 일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번 증추경으로 추가보상비 발생 등 사업 현안을 해결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26)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

- 사업기간 2014.07 ~ 2023.10 / 공영차고지 건설(시내버스 박차대수 101대, 면적 10,232㎡) 및 저류조 설치(지하2층, 면적 7,000㎡, 용량 35,000㎡) / 진입도로(폭 10~12m, 길이 153m)

27) 신림공영차고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주차계획과-9426(2014. 7.17)

28)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사업별 설명서 p.586)**

- 동 사업은 버스노선 조정 등으로 인한 은평권역의 박차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서 제2공영차고지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72억 2백만원) 및 '20년 예산(70억 96백만원) 총 142억 98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차고지 조성 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토지매입비 70억 96백만원(49.6%)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서울시가 진관 제2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은평구에 차고지 조성관련 협조 요청²⁹⁾을 하였고 이후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은평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에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음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사업부지에는 관련 조례³⁰⁾에 따라 전체 사업 부지면적(약 3,492,650m²)의 0.6%(약 20,960m²)에 해당하는 주차장 부지를 기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중 일부(5,077m²)를 진관 제2공영차고지 부지로 대체함에 따라 해당 면적 만큼의 주차장 부지를 촉진지구 안에서 재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대체부지 선정이 늦어진 바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³¹⁾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29) 주차계획과-6376(2017.11.20.)

3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주차장설치의 고시) ③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31) 현재 촉진지구 안에 차고지 부지는 일부 주차장 용지로 되어있고 차고지 조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무실, 세차동, 정비동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자동차정류장 용지로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

- 동 사업의 감액 사유는 일부 있다고 할 것이나 '19년 예산 72억 2백만원이 전액 이월된 바 있음에도 '20년 예산 70억 96백만원을 편성하고 이를 다시 전액 감액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업이 파행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임
- 동 사업은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차고지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본격적인 사업진행에 앞서 대체부지 선정 및 도시계획변경 관련 사전절차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후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해야 할 것이며 향후 SH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차 없는 거리 운영(사업별 설명서 p.590)

- 동 사업은 보행문화를 확산하고자 도심권 도로에 차없는 거리 행사 시행과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3억 7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행사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행사운영비 20억 52백만원중 6억원(13.7%)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당초 도심권 도로인 세종대로와 대학로에 총 24회의 행사를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상반기 13회의 행사가 취소되어 이에 대한 비용지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³²⁾하는 것은 이해된다 할 것임

32) 차 없는 거리 행사 변경사항

대상도로	당초(회)	변경(회)	비 고
세종로	16	7	4억원(1회당 행사운영비 44.4백만원 × 9회 감회)
대학로	8	4	2억원(1회당 행사운영비 50백만원 × 4회 감회)

- 다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올 하반기 행사추진 계획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이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별 설명서 p.595~602)

- 동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347억 99백만원 (국비 126억 36백만원, 시비 221억 63백만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제2차 추경시 간주처리³³⁾로 111억 4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44억원(41.4%, 국비 102억원, 시비 42억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68억 63백만원(61.6%)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33)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서 p26 : 교통사업특별회계 제1차 간주처리(2.2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계	20,399	2,436	17,963	34,799	12,636	22,163	△14,400	△10,200	△4,200	
	시설비	신규 지정	3,586	2,436	1,150	2,786	1,636	1,150	800	800	-
		시설 정비	13,819	-	13,819	18,819	5,000	13,819	△5,000	△5,000	-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	-	-	10,200	6,000	4,200	△10,200	△6,000	△4,200
		보행환경 개선	2,986	-	2,986	2,986	-	2,986	-	-	-
	업무추진비	8	-	8	8	-	8	-	-	-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계	18,006	11,143	6,863	11,143	11,143	-	6,863	-	6,863	
	공공 운영비	전기 통신료 등	100	100	-	200	200	-	△100	△100	-
	시설비	과속 카메라 설치	17,706	10,843	6,863	10,443	10,443	-	7,263	400	6,863
	감리비	신호기 감리	200	200	-	500	500	-	△300	△300	-

○ 당초 민식이법 개정³⁴⁾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시설정비 예산과 함께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예산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국비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해 '20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분하여 증액·교부됨³⁵⁾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34) 민식이법 주요내용('20.3.25 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

35)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알림(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752, '20.2.14)

- 서울시 교부금 : 총 13,579백만원(보호구역 개선 2,436백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1,143백만원)

구축”사업을 분리하고, 5:5 국·시비 매칭비율을 맞추고자 시비를 증액하는 등 예산변경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사업예산 편성 당시 국비교부 및 사업추진 방법과 교부액에 대해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을 경우 별도의 추경안 마련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예산편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 재정여건상 국비와 시비를 5:5 매칭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민식이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시점에서 시비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되며,

과거 국비 매칭사업중 시비 미확보로 적정한 국비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매칭비율에 맞는 시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한편 '20년 예산서³⁶⁾에서 ‘다가능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총 102억원 중 60억원만 국비로 편성되었으나, '20년 3회 추경안³⁷⁾에서는 편성된 국비를 초과하여 102억원을 감액하는 등 일부 추경안과 국비 교부금액이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임

36) 2020년 예산서 p654

37)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서(안) p187

□ 도로점용료 등 징수 교부금 (사업별 설명서 p.615)

- 동 사업은 효율적인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자치구에 징수경비를 교부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93억 50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도로점용료 일부가 감면됨에 따라 71억 74백만원(18.2%)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³⁸⁾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³⁹⁾에 따라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은 서울시 수입으로 하며, 자치구 징수 실적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50%, 변상금의 40%를 징수경비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도로점용료 감액 조치를 협조요청⁴⁰⁾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25%가 감액 징수되고, 서울시 수입이 감소되어 자치구 교부금이 감액되는 것은 이해된다 할 것임
- 다만, 국토교통부 요청과 도로점용료 감면 취지를 고려해 일부 기 수납된 점용료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산정하여 대상자(피허가자)들

38)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에서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의 부과·징수, 변상금의 부과·징수는 자치구로 위임

39)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2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 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1. 점용료의 경우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

40)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2020년도 도로점용료 감액 등 조치 협조요청(국토부 도로운영과-1968호, '20.4.17.) : 도로점용료 25% 감액 징수, 기 수납된 점용료는 원금과 이자를 반환

에게 반환이 필요하며 반환되는 이자는 서울시의 과오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을지로, 세종대로,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별 설명서 p.603~614)**

- 동 사업은 도심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자전거 도로를 넓혀 도로 공간을 재편하여 녹색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을지로와 창경궁로 사업은 각각 기정예산 40억 24백만원에서 35억 24백만원 (87.6%), 26억 10백만원에서 21억 10백만원 (80.8%)을 감액하고, 세종대로 사업은 96억 30백만원에서 53억 34백만원 (55.4%)을 증액하는 것임

[을지로, 세종대로,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 추정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76,524	76,824	△300	-0.4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	500	4,024	△3,524	-87.6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14,964	9,630	5,334	55.4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500	2,610	△2,110	-80.8

- 을지로와 창경궁로 사업은 '19년도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나, 교통안전시설심의가 미완료⁴¹⁾되어 예산집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것이고, 세종대로 사업은 교통안전시설 심의⁴²⁾가 완료되었으나 토목, 전기 분야 미 확보 공사비 및 추가적인 가로숲 조성비 마련⁴³⁾을 위해 추정안을 마련한 것임

41) 을지로 교통안전시설심의 요청(보행정책과-1592, '19.8.27), 창경궁로 교통안전시설심의 요청(보행정책과-6642, '20.5.7)

42) 교통안전시설심의 요청(보행정책과-4825, '19.10.25), 교통안전시설심의 완료(교통관리과-7880, '20.4.21)

43)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예산 변경계획(보행정책과-6980호, '20.5.14.)

- 당초 '20년 본예산 96억 30백만원에서 총 142억 18백만원(토목 전기분야 부족액 87억 18백만원, 가로숲 조성 55억원) 예산 마련을 추진

- 세종대로 사업의 경우 푸른도시국에서 세종대로 가로숲 조성비를 동 사업에 반영하자는 의견⁴⁴⁾을 고려한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사전에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했을 경우 추경예산액과 사업기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을 것이며, 을지로와 창경궁로 사업은 교통안전시설심의 및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심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향후 사업일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 도심연계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사업별 설명서 p.622)

- 동 사업은 청계천을 통해 도심 종로, 을지로와 연결하고 중랑천 및 한강의 자전거 주요동선과 연결하는 자전거간선도로망(CRT)⁴⁵⁾ 체계 구축을 위해 청계광장~청계7가 구간(3.75km)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2억 96백만원을 편성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16억 50백만원(50.1%)을 증액하는 것임
- 동 사업은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이후 사업구간 확장 및 자전거도로망 조성방식을 변경하고 설계용역⁴⁶⁾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을 편성한 것이나,

현재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이 완료⁴⁷⁾되지 않았고 사전절차인

44) 세종대로 도로공간재편사업 가로숲 조성 관련 검토의견 송부(조경과-5920, '20.4.21.)

45) CRT(Cycle Rapid Transportation) : 서울 자전거도로의 간선과 지선망을 타 교통수단과 상충되지 않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망

※ 자전거정책과-3202(2019.10.21.)호, CRT정의는 향후 용역을 통해 확정 예정

46) “도심순환형 청계천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임

- 용역기간 : '19.12.31.~'20.8.30., 용역비 : 219백만원(수의계약)

- 용역사(공동수급) : 제일엔지니어링, 케이아트엔지니어링

※ 자전거정책과-3058(2019.10.16.)호, “도심순환형 청계천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에 의거 설계 용역 중이며 '19년 10월에 설계 발주하였으며 2회 유찰로 추진이 지연됨

주민의견 수렴과 교통안전시설심의 통과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공사 착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사업비 증액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관계기관 협의와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방식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하철역사내 자전거 경사로 및 역이용 안내도 설치(사업별 설명서 p.626)

- 동 사업은 지하철내 평일 자전거 승차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 사업⁴⁸⁾으로 2억 94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동 사업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수송 강화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주말에만 허용하고 있는 일반 자전거의 휴대승차제도를 시범적으로 평일로 확대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역사 내에 자전거 경사로와 픽토그램, 안내표지판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임

다만, 현재 서울교통공사(1~8호선) 여객운송약관⁴⁹⁾에서 일반자전거의 평일 휴대를 금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도권 지하철운송기관

47) 2020.8.30.일 용역 완료예정-“도심순환형 청계천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48) 자전거정책과-6088(2020.6.1.)호 “자전거 지하철 휴대 승차 확대 추진계획”

- 시범노선 : 지하철 7호선 - 시범기간 : '20.9.~10.(2개월), 10시~16시

49) 여객운송약관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 ①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에서도 일반자전거의 평일 휴대를 금지⁵⁰⁾하고 있는 상황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하철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중교통 방역체계 및 혼잡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의 추경 신규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에서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지하철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 시범실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⁵¹⁾한 상황이므로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운영을 위한 자전거 경사로 추가 설치 6개 역사⁵²⁾를 제외하고 7호선 역사에 기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 위치⁵³⁾와 평일 자전거 휴대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지하철 이용시민의 혼란 및 불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별 설명서 p.629)**

- 동 사업은 서울시내 교차로 신호운영 최적화와 신호등 및 부가 장치의 유지보수 사업으로 기정예산 150억 50백만원을 편성했으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의 낙찰차액(총 20억 23백만원) 중 일부 사업비 15억원(10.0%)을 감액하는 것임

50) 수도권 지하철기관별 자전거 휴대승차 현황

구 분	평 일	토 요 일	일·공휴일	승차위치
서울교통공사(1~8호선)	접이식	접이식, 일반	접이식, 일반	맨앞칸, 맨뒤칸
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접이식	접이식	접이식	
분당선, 공항철도	접이식	접이식, 일반	접이식, 일반	
중앙·경춘·경의선	접이식	접이식, 일반	접이식, 일반	
인천 1호선	휴대불가	접이식, 일반	접이식, 일반	

51) 2020.06.10.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석간) “서울교통공사, 7호선에서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운영”

- 서울교통공사, 9~10월까지 2개월 간 7호선서 10:00~16:00 사이 시범운영 실시
- 7호선 내에서만 평일 휴대승차 가능, 타 노선 이용 시에는 승차 불가
- 시행 전 주요 거점역에 자전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해 이용 편의 제공 예정

52) 자전거 경사로 시범 설치(6개역 21개소) : 중계, 학동, 반포, 이수, 장승배기, 대림역

53) 지하철 7호선 자전거 경사로 현황(총 13개역 44개소)

- 노원, 떡골, 중화, 뚝섬유원지, 내방, 신평, 운수, 부천종합운동장, 춘의, 신중동, 삼산체육관, 굴포천, 부평구청

- 동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발주한 용역들에 대한 계약체결시 발생하는 낙찰차액 증 집행잔액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추경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예산편성 운영기준⁵⁴⁾과는 맞지 않으나 코로나19 추경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그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낙찰차액 및 예산 조정액(10억20백만원)의 비율이 사업비(46억원)의 약 22%로 타 사업에 비하여 많은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연간 유지보수 물량의 증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추경안]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안	기정예산	발주액	낙찰차액	예산 조정액	증감율	
총 계	13,550,415	15,050,415	12,570,160	2,023,194	△1,500,000	△10.0	
F0F001영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3,579,800	4,600,000	4,600,000	1,020,491	△1,020,200	△22.2
	교통신호체계 운영	3,759,000	4,000,000	4,000,000	241,000	△241,000	△6.0
	중앙컴퓨터 유지보수	324,490	370,000	370,000	45,795	△45,510	△12.3
	교통안전시설 정비	3,047,710	3,241,000	3,093,160	658,443	△193,290	△6.0
	T-GIS유지관리 용역	307,000	307,000	307,000	35,565	-	-
	전수조사 및 T-GIS정확도 개선	200,000	200,000	200,000	21,900	-	-
	공공요금 및 부품등 구매	2,133,065	2,133,065	-	-	-	-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추특비 등	199,350	199,350	-	-	-	-	

54)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2019.7. 행정안전부」 p349 “4)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사업별 설명서 p.650)

- 동 사업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의 교통 시설 개선 및 버스 흐름개선을 통해 버스이용 안전확보 및 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3억 14백만원에서 8억원(34.6%)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과 이용불편 지점 총 22개소에 대한 흐름개선 설계 및 공사용역을 추진하던 중 자치구에서 재검토 요청한 1개소⁵⁵⁾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부결된 1개소⁵⁶⁾에 대한 사업이 연내에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매년 해당예산의 이월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지점 선정시점부터 해당 자치구 및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또는 교통안전시설심의 완료 후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 감액 및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별 설명서 p.691)

- 동 사업은 원활한 차량 소통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7억 4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60백만원(3.4%)을 추경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55) 서초구 교통행정과 - 34271호(2020.5.15.)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사업 관련 재검토 요청(이수역)”

- 자치구 의견 : 내방역에서 사당역 방향 좌회전 차로 혼잡발생 억제를 위해 현행 2차로 유지 필요

56)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5687호(2020.3.24.) “2020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

- 박미삼거리 남측교차로에 횡단보도 신설시 도로기하구조로 인해 안전확보 어렵고 교통혼잡 유발

- 동 사업의 경우 통신전용회선 재계약 과정⁵⁷⁾에서 당초보다 통신요금이 저렴해 발생한 차액과 CCTV 현장장비 철거 및 이관으로 인한 통신·전기요금 해지 및 요금제 변경⁵⁸⁾ 등으로 발생한 잔여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현장장비 철거후 해당장소(지점)에 부과되었던 전기료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전기료 부과철회와 부적절하게 부과된 전기요금제 변경을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등 시설관리를 철저히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해야 할 것임

57) 무인단속시스템 통신요금(전용회선) 재계약 추진계획(교통정보과-8927, '19.12.19.)

58) 무인단속CCTV 전기요금 해지 및 요금제 변경 요청(교통정보과-4257, 2019.10.8. .市→한국전력공사)